

의안번호	2220125
의 퇴 인	박정의원
회 답 일	2026.7.28.
추계번호	26B3718
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6조의2(고정형 무인 소음단속장비의 설치·운영 등)	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측정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	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(제2항) 제1항에 따른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의 설치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36조의2(고정형 무인 소음단속장비의 설치·운영 등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·운영하고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현재 경기도에서만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성남시에 2대, 의정부시에 1대의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장비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,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해당 장비가 설치·운영되고 있지 않음
 - 참고로, 경기도에 따르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장비의 구입비는 대당 7,000만원, 설치비는 대당 1,000만원임

- 또한 경기도에 따르면, 2027년도 예산을 통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장비 20대를 추가 설치·운영할 계획임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장비의 설치 규모·기종,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개정안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